CARF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는가?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OECD 가상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는 보고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로부터 자기확인서(self-certification)를 받고, 거래 내역을 서비스제공자 소재 관할의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해당 과세당국은 그 정보를 이용자의 거주지 관할과 교환합니다. 스위스는 조세 분야 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CARF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파트너 관할을 지정하는 연방 결의가 2025년 11월에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 수집은 빨라도 2027년 1월 1일에 시작되고, 최초 교환은 2028년에 이루어집니다(제C편 제VI장 및 제G편 제VII장 참조).[1] 싱가포르는 2024년 CARF 다자간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에 서명하고 2027년 또는 2028년에 최초 교환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국내 시행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의 정보교환 규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2]

독자가 먼저 따져 보아야 할 질문은 해당 사업이 애초에 보고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정의는 영업으로서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교환거래를 실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법인과 개인을 포괄합니다. 거래소, 브로커, 딜러와 플랫폼 운영자가 여기에 포함되며,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기만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거래를 전혀 실행하지 않는 순수 수탁업자는 CARF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 CRS에서는 금융기관으로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기보관형 지갑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두 제도 모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3]

검토 순서

1. 해당 사업이 영업으로서 고객을 위하여 관련 가상자산의 교환거래(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가상자산 상호 간)를 실행하거나, 고객이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가? 그렇다면 보고의무가 있는 서비스제공자입니다. 현물 거래소, 브로커, 장외거래(OTC) 데스크와 주문 매칭 프런트엔드 운영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업이 세법상 거주지, 설립, 관리, 사업장 또는 규제를 통하여 참여 관할과 연결되어 있는가? 추크(Zug) 회사는 스위스와 연결됩니다. 싱가포르 회사는 싱가포르와 연결됩니다. 두 관할 모두와 연결된 회사는 거주지 판정 규칙(tie-breaker)을 적용하여 우선 거주지 관할에서 보고합니다.
3. 어떤 가상자산이 관련 가상자산에 해당하는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보유·이전할 수 있는 모든 가상자산이 해당합니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특정 전자화폐 상품, 그리고 서비스제공자가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폐쇄형 유틸리티 토큰은 문서화를 전제로 마지막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고객이 보고대상인가? 서비스제공자의 관할과 정보를 교환하는 관할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수동적 법인의 지배자가 보고대상입니다. 보고대상 거래의 보고는 기준금액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기준인 5만 미국달러를 초과하는 소매 지급거래는 추가적인 가맹점 관련 보고를 발생시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5. 무엇을 수집해야 하는가? 각 이용자로부터 세법상 거주지에 관한 자기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거래를 하기 전에 고객 온보딩 정보와 대조하여 그 합리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2026년 1월 1일 현재의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12개월 이내에 문서화를 마쳐야 합니다.
6. 매년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교환, 이전 및 보고대상 소매 지급에 관하여 고객별·가상자산별로 유형에 따른 총액, 단위 수 및 거래 건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처는 스위스에서는 연방세무청(FTA), 싱가포르에서는 국세청(IRAS)입니다.
7. 해당 사업이 개정 CRS상의 금융기관에도 해당하는가? 고객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업자와 전자화폐 제공자는 CRS 개정의 적용을 받으며, 스위스는 이를 같은 날부터 적용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겹칩니다. 두 제도 모두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중복 방지 규칙에 따라 양쪽 모두에 보고합니다.[4]

사업 유형	CARF 보고의무 서비스 제공자?	개정 CRS상 금융기관?	설명 위치
현물 거래소(수탁형)	예	예(수탁기관)	제G편 제VII장; 제M편 제VII장
브로커 또는 OTC 데스크	예	대개 아니오	제G편 제VII장
영업으로 운영되는 탈중앙화 거래소 프런트엔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예	아니오	제O편 제V장
교환거래가 없는 순수 수탁업자	아니오	예	제G편 제VII장
자기보관형 지갑 소프트웨어	아니오	아니오	제O편 제V장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사업 유형	CARF 보고의무 서비스 제공자?	개정 CRS상 금융기관?	설명 위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아니오(교환거래도 하는 경우는 제외)	전자화폐 또는 예금기관으로서 해당 가능	제E편 제VII장
자체 토큰을 판매하는 토큰 발행인	교환거래를 실행하는 경우 최초 판매에 대하여 예	아니오	제P편 제V장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아니오	예(투자기관)	제E편 제VI장; 제M편 제IV장

체크리스트

첫 CARF 보고연도를 준비하는 추크의 거래소는 보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온보딩 절차에 통합된 자기확인서 양식. - 12개월 기간 내에 기존 이용자를 문서화하는 절차. - 상장된 각 자산을 '관련 가상자산' 또는 예외 항목에 대응시킨 분류표. - 교환, 이전 및 소매 지급을 구분하는 거래 분류 엔진. - 연방세무청(FTA)의 XML 스키마와 호환되는 보고 파일 형식. - 자기확인서에 관한 데이터 보존 정책. - CARF 고객 집단과 자금세탁방지(AML) 고객 집단의 대사. 두 집단은 서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

1. Federal Act on the International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of 18 December 2015 (AEOIA; AIAG, SR 653.1). CARF와 개정 CRS를 시행하는 2025년 연방법에 의하여 개정됨. 2025년 2월 19일자 연방평의회 교서. 제G편 제VII장 참조. ↩
2. 싱가포르의 CARF 이행 약속과 시행 일정은 제M편 제VII장에서 다룹니다.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OECD,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Amendments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2, Section IV.B (Reporting Crypto-Asset Service Provider) 및 Section IV.A (Relevant Crypto-Asset). 제O편 제V장 참조. ↩
4. 개정 CRS와 CARF의 상호관계는 제G편 제VII장에서 설명합니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